

#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사업시설유지관리업

## →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?

▶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.

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,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·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.(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)

##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

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
## → 사업시설유지관리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(사망사고) 사례는 무엇인가요?

▶ 사업시설유지관리업종에서 최근 5년('19~'23년)간 전체 4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 
: 떨어짐 32, 넘어짐 4, 부딪힘 4, 산소결핍 2, 끼임 1, 감전 1, 기타 3

### 떨어짐

'20.11. LED조명 설치를 위해 A형 사다리 사용 중 2.6m에서 떨어져 사망



#### 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사다리는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러짐 없는 바닥에 설치
-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
- 2인 1조로 작업

### 넘어짐

'20.11. 옥상 누수 점검 시 이동 중 넘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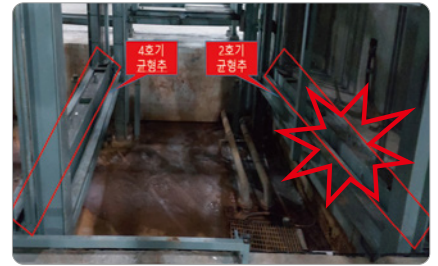


#### 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바닥 물기·이물질 상시 제거
-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화 착용
- 야간 순찰 시 개인용 손전등 지급

### 끼임

'20.11. 주차엘리베이터 내부 확인 중 작동하는 균형추에 끼여 사망



#### 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기계식 주차설비 작동 시 출입금지
- 기계 점검 시 작동금지 표지 부착 및 작동하지 못하도록 감시원 배치
- 기계식 주차장 내 사람이 있는지 감지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부착

※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(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)

## 이것만은 기본!

- ①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하세요.
- ② 업무시작 전에는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(주의)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.
- ③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, 안전스티커를 설치·부착하세요.
- ④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.
- ⑤ 사다리 사용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꼭 안전모를 착용하고, 턱끈을 조여주세요.(30cm 높이에서도 근로자가 떨어져서 사망하였습니다.)



업종별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(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)

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

##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!

※ 동 내용은 중소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'22년 배포한 가이드(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QR코드 참고)를 간소화하여 작성한 자료이며, 상세한 법적의무사항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(사업시설유지관리업)

##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

- ▶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사항 총 15가지 중 **핵심 의무사항을 안내**하니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**할 수 있는 것부터**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!!
  - ▶ 안전보건관리체계란?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·이행하고,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.
- ▶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아래 핵심 의무사항을 **최소 반기 1회는 체크해보세요!!**

### 핵심 의무사항 하나!

#### ※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.

- ▶ **예시** ◀ 아래는 예시임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립 가능  
(방침) “우리의 안전이 곧 우리 회사의 경쟁력입니다.”  
(목표) “떨어짐(또는 미끄러짐, 넘어짐 등) 사고 00건 감소”, “매월 00회 작업장별 숨은 위험 찾기” 등  
(공유·전파)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사업주의 의지를 알리고, 근무 공간이나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

우리 사업장은?

예    아니오

### 핵심 의무사항 둘!

#### ※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.

- 상시근로자 20~50인 미만 사업장 중 하수, 환경, 폐기업, 제조업, 임업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(권고사항) 다만, 법적으로 **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·담당하는 인력**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**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** 하는 것이 **바람직**합니다. (검직 가능, 사업주(대표)가 수행 가능)
  - ▶ **예시** 직원 중 선임(반장급) 직원을 안전보건 관련 업무 수행 직원으로 지정

우리 사업장은?

예    아니오

### 핵심 의무사항 셋!

#### ※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(비용)을 사용합니다.

-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(비용)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.
-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.
- ▶ **예시**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, 공기호흡기, 송기마스크 등) 구입, 고소작업대, 안전표지판 설치 비용 등

우리 사업장은?

예    아니오

### 핵심 의무사항 넷!

#### ※ 우리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(위험성평가)을 합니다.

-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(아차사고) 보고 등 근로자 안전제안제도를 운영(건의함, 게시판 등 설치)하고,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.
- 위험성평가 방법, 서식 등은 위험성평가 시스템(오른쪽 QR 참조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- ▶ **예시**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에 근로자 의견을 듣고, 개선 및 주의사항을 근무 시작 전 조회시간,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무 공간, 휴게실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
  - ▶ **유해·위험요인 예시**
    - ⊙ 사다리, 난간 없는 작업대 사용    ⊙ 작업(이동) 통로 장애물, 미끄러운 바닥
    - ⊙ 기계식 주차설비 등 정비·보수·청소 시 전원 미차단
    - ⊙ 건물 외벽(달비계) 작업(작업 전 로프 손상 여부, 연결 상태 등 미점검, 안전대 별도 수직구명줄 미체결 등)
    - ⊙ 지하 맨홀, 집수정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, 환기 미실시 등

우리 사업장은?

예    아니오



### 핵심 의무사항 다섯!

#### ※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,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.

- ▶ **예시** 화재 등 비상대응 매뉴얼(비상대피도, 비상연락망, 이송 병원 등) 마련, 이전에 발생한 사고별 재발방지대책 마련

우리 사업장은?

예    아니오